

「2026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표창 공고

「2026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수출증진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수출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수출증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공적이 있는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7. 1.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시상시기 : 「2026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12월8일) 행사시 수여
2. 표창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공자 등
3. 선정규모 : 총 7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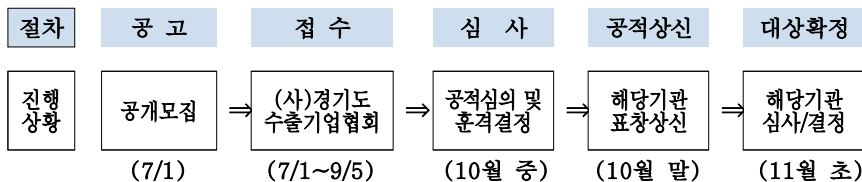
표창분야		표창대상
기업	수출증진분야 (30개사)	- 수출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 - 수출증가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기업
	수출혁신분야 (20개사)	- 시장개척 모범사례 기업 - 수출을 통한 경영난 극복사례 기업 - 혁신을 통한 수출애로 극복사례 기업 - 수출품목 개발 및 수출 우수사례 기업
	교류협력분야 (10개사)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기여기업 -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 기업 - 경기도 및 시·군 사업 참여와 협회 활동 참가 등 적극 협력 추진 기업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유공자 (10개사)		- 수출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임직원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기업지원 공로자

4. 표창훈격 : 총 70 점

(내부)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외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KOTRA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표창 훈격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표창대상자 선정과정



6. 신청 기간 : 2026. 7. 1(수)~2026. 9. 4(금)

7.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 ② 로그인 ⇒ (상단) 나의 지원사업 ⇒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 ③ 온라인 신청 ⇒ 메인 화면에서 “2026년 경기도수출기업인의 날 수출 유공자 모집” 검색 ⇒ (하단) 지원사업 신청 ⇒ 기본정보 입력후 (하단) 제출서류정보, 나의 서류함 필수제출 파일 업로드
- ④ 보완요청시 ⇒ (상단) 나의 지원사업 ⇒ 현재 참여사업 ⇒ 신청서 확인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 031-259-6461~3

나. 첨부 신청 양식에 작성

- ①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원본은 별도 등기 우편 (9월 4일 소인까지 유효) 송부

8. 제출서류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 표창추천서(신청서) - 기업용(기업대표)	기업신청인 경우 - [서식1] 신청서만 작성
2. [서식2] 표창추천서(신청서) - 개인용(임직원)	개인(임직원)신청인 경우 - [서식1] [서식2] 모두 작성
3. [서식3] 공적조서	[서식3-1] 작성예시 참조
4. [서식4] 이력서	
5. [서식5] 소속기업현황	
6. [서식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7. [서식7]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업신청인 경우만 작성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9.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총 2부	2024년, 2025년 각 1부
10. 수출실적 증명서 3부	2024년, 2025년, 2026년 1월~6월 3부 (월별 수출실적 조회되어 있어야함) 직수출, 로컬 등 기타수출 발급 공고문 확인 개인(임직원): 소속기업 수출실적증명서
11. 지방세 / 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공통)	개인기업 - 대표자(개인명) 2부 (대표자:지방세, 국세 각 1부) 법인 - 기업, 대표자(개인) 4부 (기업:지방세,국세/대표자:지방세,국세 각1부) 개인(임직원)-개인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1부

12. 기업의 범위만 사실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1 개인(임직원) : 소속기업 조회 제출
13. 범위만 사실 여부 약약서 1부	별첨2 개인(임직원) : 소속기업 제출
14. 범위만 행위 치유 이행자서 1부. ※ 47개 범위만행위(붙임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별첨4 개인(임직원) : 소속기업 제출
15.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조회기간 : 2023년 1월~12월 2024년 1월~12월 2025년 1월~12월(3년조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인터넷발급 또는 팩스발급
16.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	기준일자: (총 2부 제출) 2024년 12월 31일~12월 31일 기준 1부 2025년 12월 31일~12월 31일 기준 1부 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인터넷발급
17. 제직증명서 1부	근무경력 3년 이상 (기업대표 해당부)

8. 선정발표 : 2026. 11. 13(금) 예정

9. 문의처 :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전화] 031)259-6461~3 [팩스] 031)259-6461 [이메일] gea@gea.or.kr

[주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별첨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직수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로칼 등 기타 수출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다만,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 무역협회에서 발급)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실적 없음을 확인받아 제출(신청시 未제출)해야 함 ※ 전년도 실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Local L/C, 구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달러금액 (원화인 경우 입금일 매매기준율로 환산)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단,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달러로 환산) 3)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 가득액(마진) ≡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발급 4) 위탁가공수출 : 완제품수출금액(거래은행입금액) - (원부자재통관금액 + 현지공장가공임) = 가득액(마진)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5) 수탁가공수출 : 완제품(가공품)수출금액 - 원부자재수입금액 = 가득액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6) 기타 :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 불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절충교역의 보완거래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한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용역 및 전자적무제품수출 - 경영·법무·회계·엔지니어링·디자인 등 용역 및 소프트웨어(솔루션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무제품에 대한 수출실적은 거래은행에 대금이 입금된 이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수출확인신청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무역협회(www.onlinetrade.or.kr 참조)에서 발급 (온라인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으므로써, 물품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역협회 본부·지역본부 내방 신청 및 발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행한 '로칼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증명서' KTNET의 간접수출실적증명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수출실적 합계액을 기재 ('로칼 등 기타 수출' 중에서 '중계무역, 위탁·수탁가공수출' 실적은 가득액(마진)만 기재)